



고용노동부

# 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(6판)

1. 관련: 산업보건과-738(2020.2.17) 「코로나19(COVID-19)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안내」
2. 「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5판 ('20.2.17)」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, 해당 부처는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대응 지침을 안내·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개요	주요 변경 내용	비고
코로나19 개요	진단 및 예방 내용 변경	사업장 대응지침 1-2쪽
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	사업장 자체점검표 추가	사업장 대응지침 9쪽
추가 안내사항	사업장 휴가 및 휴업 관련 내용 변경 및 유연근무제 내용 추가	사업장 대응지침 9-11쪽
참고1	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 참고 추가	사업장 대응지침 12쪽
참고2	사업장 내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참고 추가	사업장 대응지침 13쪽
참고3	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추가	사업장 대응지침 14-15쪽
참고4	코로나19 관련 참고 지침 목록 추가	사업장 대응지침 16쪽
보건당국의 조치사항	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및 접촉자 관리, 격리해제 조치내용 수정	사업장 대응지침 17-20쪽
부록1, 부록2	안내문 변경	사업장 대응지침 21-22쪽
붙임2	카드뉴스를 삭제 및 포스터 변경	사업장 대응지침 26-27쪽

※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파란색 수정내용 참조

붙임: (6판)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부. 끝.

## 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국무조정실장, 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본부장, 기획재정부장관, 외교부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 국방부장관, 교육부장관, 법무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소방청장, 경찰청장,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전문위원 **최선미** 보건사무관 **이종걸** 산업보건과장 **전결 2020.2.24.**  
**김동욱**

협조자

시행 산업보건과-874 접수 교통정책조정과-871 (2020. 2. 25.)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세 / [www.moel.go.kr](http://www.moel.go.kr)  
중정부청사 11동

전화번호 044-202-7739 팩스번호 044-202-8093 / [mimi17@korea.kr](mailto:mimi17@korea.kr) / 비공개(5)

"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